

-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2731호
----------	--------

2022. 03. 23.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2. 3. 11. 양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. 3. 11. 행정재경위원회
- 다. 상정일자 : 제2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
2022. 3. 23.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행정지원국장)

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사청구인의 요건이 완화되고, 청구연령이 하향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함.(안 제1조)
-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를 18세이상 150명으로 함.(안 제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한동석)

가. 개정 취지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주민의 권익 침해 시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고,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감사청구인의 요건 완화 및 청구연령 하향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 검토 내용

- 안 제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음.
- 안 제2조는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를 기존 19세 이상 200인에서 18세 이상 150명으로 개정하였음.

다. 종합 의견

- 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,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를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보고드립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의원 9명, 출석의원 5명 만장일치 의결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